

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성흠제 위원장입니다.

지난 4월 1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7조제6항 신설(‘19. 12. 3)에 따라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협회의 주요기능으로는 ▲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, ▲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, ▲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, ▲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.

안전감찰 전담기구 협회의 설치로 형식적인 안전관리·감독과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참여기관 간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반부패 활동을 벌이며,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부패를 근절될 것입니다. 또한 한층 강화된 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 무시 관행과 안전 부패를 근절 될 것을 기대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